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968
등록일자	2015.1.19.
결재일자	2015.1.2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	
이상은	조현석	김용운	전결 01/21 문경수		
협조자					

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계획



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(세출예산의 이월)
-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(이월예산의 집행)

사고이월

-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

사고이월 대상

-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
-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
-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의 경비
- 조례에 규정된 정상적 성격의 경비

2015. . .

강 남 구
(기 획 예 산 과)

【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재정법, 지방재정법시행령, 강남구재무회계규칙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법규사항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예산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강남구민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○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○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⑨ 투유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-----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()</td> </tr> </table>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유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유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 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가 자문 불필요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계획

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,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(세출예산의 이월)
-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(이월예산의 집행)

II 사고이월 개요

사고이월이란

-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
-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
-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해 운용

- ①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
-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
-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

①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

- 당해연도 내에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인 행위로 2014. 12. 31까지 지출원인행위부에 반드시 등재

② 불가피한 사유로

-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,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·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
-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이유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

③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

-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①의 사고이월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
- 주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
-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

○ **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 다음 경비**

-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- ②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의 계약체결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
- ③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-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○ **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 경비**

-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
-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,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
-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

○ **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다음 경비**

- ①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(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)

IV

사고이월 제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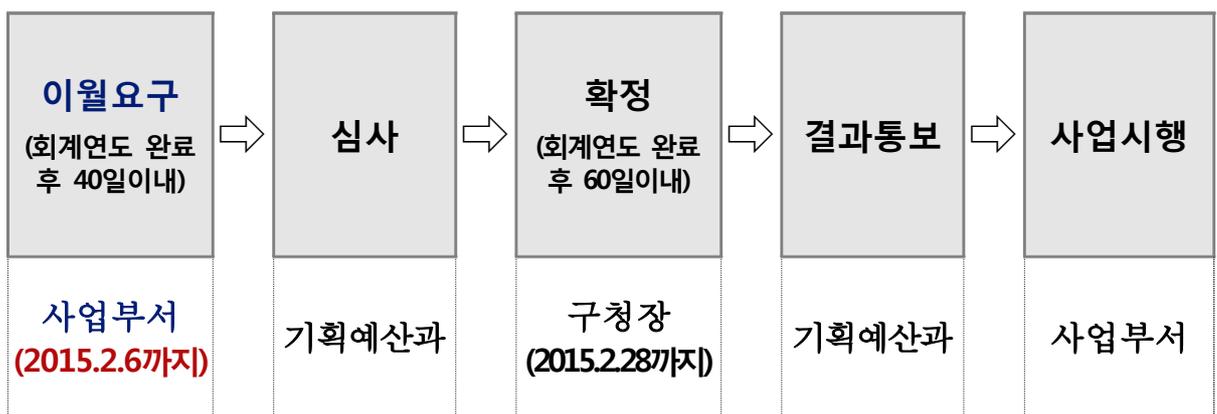
- 2014 회계연도 사고이월예산은 2015 회계연도 사고이월예산으로 재이월 불가
- 이월예산을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
-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

V

사고이월 절차

- 대상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기획예산과장에 사고이월 요구

사고이월 절차



※ 지출액 수정요구
(2015.2.23까지)

사고이월 요구시 유의사항

- 관계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가피한 사유와 타당성 있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파악하고, 사고이월 대상의 누락이나 요건이 미흡한 사업의 사고이월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기간(2015.2.28) 이전에 발생하는 지출 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지출금액이 발생될 때에는 수정요구서 제출(2015.2.23까지)하여 2014 결산시 사고이월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
-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기간(2015.2.28)까지 지출할 경우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

“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요구서” 및 증빙서류 제출

- 제출서식 : 서식1, 서식2, 서식3, 서식4(해당사업만)
- 증빙서류 : 지출부, 지출원인행위부, 관련방침, 계약서 및 준공연기각서 사본, 감정평가서 등
- 제출기한 : **2015. 2. 6(금)까지**

- 붙임 1. 사고이월요구서 서식 4부
2. 사고이월 관련 규정 1부

【서식 2】

2014 회계연도 사고이월 명세표

분 임 경 리 관 인
 사 업 주 관 부 서 장 인
 작 성 자 직 성 명 인

□ 부서명

(단위 : 원)

세부사업명	2014 회계연도 예산				지출원인행위 (2014.12.31기준)		지출액 (2015.2.28기준)		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		집행 잔액	이월사유	예산 구분 (본· 추경· 간주)	비고
	통계목 (과목코드)	예산 현액	배정액	배정 월일	월 일	금액	월 일	금액	이월액	준공예정 년월일				
총 계														

※ 작성요령

1. 사업명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이월액은 총 사고이월 금액을 기재하되, 지출원인행위 미필이월액은 이월액란에 ()로 별도 명기할 것.
2.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**최초~최종월일** 기재하고, 지출금액은 **총금액**으로 기재
3. 이월 사유란에는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함께 지출원인행위 미필이월 요지를 함께 명시할 것.
4. 예산 구분란은 본예산, 추경예산, 간주처리 구분하여 기재하고, 비고란에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 구분 작성
5. 과목코드는 『편성목-통계목』을 명기(ex. 401-01)

【서식 3】

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

□ 사업명 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착공일 ~ 준공예정일 (2015. 2월말 현재 공정율)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내용

-

-

□ 이월요구 세부내역

○ 이월사유 : 구체적으로 작성

- 예) 10월에 공사 발주한 경우 10월전까지 추진상황(지연된 사유) 등 기재

- 예) 1분기에 공사 등을 발주하였으나 사고이월 요구 시 그 이유를 기재

○ 이월내역

- 예산과목 :

- 예산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예산현액(A) '13이월액 제외	배정액(B)	지출원인행위액 (C)	지출액(D)	사고이월액(E) (원인행위미필액)	집행잔액 A-(D+E)
계					()	
					()	
					()	
					()	

※ 구분란에 통계목(시설비, 용역비, 자산취득비, 사무관리비 등) 기재

【서식 4】

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명세서

사업명 :

공사기간 :

예산과목 : 부서,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, 편성목, 통계목

원인행위 미필 이월액 :

원인행위 미필 내역 및 사유

(단위 : 원)

이월내역		원인행위 미필사유
세부내역	금액	
계		

작성자 : (인)

확인자 : (인)

사고이월요구서 등 작성요령

- (1) 사업명마다 계약서 및 준공연기 이행 각서 첨부
- (2) 보상비는 감정평가서, 지번별 사정액 조서 및 계약서,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
- (3) 지출원인행위미필 이월액(부대경비)도 사고이월 명세서와, 근거서류 첨부
- (4)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반드시 관련 회계장부와 일치하여야 하며,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첨부
- (5) 사고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액(부대경비)을 포함한 총 이월액을 기재하고, ()로 지출 원인행위미필 이월액을 별도 명시함.